KOSHA GUIDE C - 105 - 2022

6.1 작업계획 수립 및 검토

6.1.1 굴착기 작업시 고려사항

- (1) 굴착기 작업 안전 보건 계획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·위해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·위험 요인에 대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(빈도)과 중대성(강도)을 추정·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(2) 위험성평가는「고용노동부고시 제 2014-48호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.
- (3) 굴착기 선정시 고려사항
- (가) 굴착기는 작업여건, 작업물량, 운반장비의 조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- (나) 굴착기와 선택작업장치는 작업 목적에 적합한 기종을 선정하여야 한다.
- (다) 굴착기는 운전자 보호를 위하여 운전석에 헤드가드(Head Guard)가 설치 된 기종을 선정하여야 한다.
- (4) 굴착기를 사용하여 인양작업을 할 경우에는 해당 굴착기가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.
- (가) 굴착기의 퀵커플러 또는 작업장치에 달기구(훅, 걸쇠 등을 말한다)가 부착되어 있는 등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일 것
- (나)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정격하중이 확인되는 굴착기를 사용할 것
- (다) 달기구에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작업 중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을 것
- (5) 굴착기를 이용한 인용작업시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사용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부터 제1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다. 이 경우 "양중기" 또는 "크레인" 은 "굴착기"로 본다